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63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김승남·윤재갑·오영환

이개호・최종윤・서동용

이용빈 · 맹성규 · 주철현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치금액 등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다른 허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은 수산자원 회복, 어업분쟁 조정 및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등 지원하는 감척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감척지원을 받은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근해어업 감척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연근해 감척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 내에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근 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그 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척대상자로 선정되어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 |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
| 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 | |
| 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 |
|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 |
| | 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
| | 3년 이내에 「수산업법」 제4 |
| | 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 |
| | 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 |
| | 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받은 |
| |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 |
| | 하여 그 어업을 영위하는 경 |
| | <u> </u>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